

치과 병·의원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 강화한다

- 치과 의사 대상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홍보 추진
- 관계 기관과 협력해 치과 의사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인식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 부회장)와 협력하여 치과 병·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한 사용과 철저한 취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치과 의사가 증가하면서 치과 병·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과 취급관리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취급보고 및 보관·관리, 마약류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 시 주의사항 등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요 사항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동 제작하여 '25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이력이 있는 치과 의사를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내 자료실에서도 확인 가능

또한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매년 상·하반기 한 달씩 치과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 교육은 9~10월에 총 5회 진행될 예정*이다.

*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온라인 교육센터(www.nims.co.kr)에 공지 예정

아울러 올해는 치과 의사가 많이 참여하는 학회 및 학술대회를 활용한 실시간 소통하는 현장 교육도 새롭게 추진한다. 치과 의료현장을 고려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취급 시 유의사항 ▲마약류 관련 법령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개정사항 ▲행정처분 주요 사례 등이다.

* 현장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회 및 학술대회 상세 일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에 공지 예정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치과 의사 및 치과 병·의원 종사자의 교육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와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치과 병·의원 대상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및 취급관리 홍보 포스터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익명·비밀보장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 ☎1342 또는 카카오톡 채널 “1342용기한결음 마약류 상담센터” 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42용기한결음 마약류 상담센터
--	--



식물의약품안전처 | 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ADHD #살빼는 약 #나비약 #마약 #대마 #향정

“마약 문제로 힘들 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고통스럽고,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1342**가 함께 할게요.

1342
당신의 일상 SOS 24시간 사이
통화내용 비밀보장!

담당 부서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은주 (043-719-2893)
		담당자	사무관	김지선 (043-719-2884)
담당 부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본부	책임자	본부장	최광연 (02-2172-3810)
		담당자	팀 장	박주연 (02-2172-6740)



의료용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를 취급한다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취급내역을 보고합니다.

- ▶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구입, 투약, 폐기, 양도, 양수)한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그 내역을 취급보고 합니다.
- ▶ 취급한 제품명, 수량, 재고량 등을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취급보고 합니다.
- ▶ 처방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가능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 발행 시, 필수 정보를 기입합니다.

- ▶ 병원 소재지, 병원 상호(명칭), 치과의사 면허번호, 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환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마약류 보관·관리 의무를 준수합니다.

- ▶ 마약류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 마약 :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에 저장(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 포함)
* 향정신성의약품 :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
- ▶ 저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점검,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2년간 보존합니다.
- ▶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8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연번	일시	점검내용	저장시설 이상 유무	재고량 이상 유무	그 밖의 이상 유무	점검자	서명 또는 인

의료용 마약류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취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 가입 및 취급보고 문의

www.nims.or.kr / 1670-6721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치과의사협회
KOREAN DENTAL ASSOCIATION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